



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0. 3. 30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정책과
과 장 : 배 호 열
사무관 : 김 경 미, 이 성 도
전 화 : 500-2093
쪽 수 : 2P
별첨자료 : 있음(1P)

이 자료는 2010년 3월 31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농식품 위해정보 정기 브리핑 실시키로

- 농식품부 제5차 농식품안전자문단회의 개최(3.29) -

□ 농식품부는 지난 3월29일 14시 경기도 과천 농식품부 영상회의실에서 제1차관(민승규) 주재로 제5차 농식품안전자문단회의를 개최하여, 2010년도 식품안전 중점 추진계획, 원산지 표시 확대 방안 등을 보고하였다.

○ 농식품부는 금년 중으로 고독성 농약 3종(메타, 프리건 등)을 사용금지하고 안전성 부적합 비율이 높은 8개국 20개 수산물 품목을 중점관리하기로 하였다.

○ 또한, 2011년부터는 고독성 농약을 전면 사용금지하고, 축산물 사료에 항생제를 금지한다고 밝혔다.

□ 이 자리에서,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재옥 회장은 투명한 정보소통을 위해 농수축산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정기적인 언론브리핑을 실시함으로써 식품위해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.

○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수축산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분기별로 실시하기로 하였다. 첫 번째 언론브리핑은 오는 4월중에 있을 예정이다.

○ 언론브리핑의 내용은 수입품을 포함하여 농수축산물의 안전성 조사 결과, 부적합 내역 및 조치사항, 원산지 단속실적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. 보다 구체적인 공개대상과 수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4월초 확정할 계획이다.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지금까지 농수축산물 위해정보가 각 산하기관별로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으나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”이라며 “앞으로는 정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농수축산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활기를 띠게 될 것”이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.

<참고 : 농수축산물 위해정보 공개현황>

☐ 일반적인 농축산물 안전·품질·표시 등의 정보는 각 기관별 홈페이지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(foodsafety.go.kr)에 공개

*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농림수산물 정보센터에서 정보관리 수행

☐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는 분기별 실적자료를 설명자료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며, 부적합 농수산물의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음

☐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결과, 수거검사 결과 등 안전성검사 결과는 실적자료를 설명자료 없이 공개

○ 다만, 축산물 잔류물질 모니터링 검사결과 기준 위반농가는 농장명, 주소지 등 세부내역을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

* 잔류물질 위반 축산농가는 6개월간 출하정지 조치, 출하시 정밀검사 대상(규제검사)에 포함

* 규제검사 대상 축산물은 검사결과 확정시까지 도축장에서 출고 금지, 위반시 폐기 조치

<검사관련 정보공개(공표) 현황>

구분	공개내용	공개주체	방법 및 시기
농산물	· 농산물 안전성조사결과	농관원장	홈페이지, 분기, 보도자료(사안발생시)
축산물	· 잔류물질위반농가	수과원장	홈페이지, 수시
	· 회수대상축산물	영업자	홈페이지, 일간지, 발생시마다
	· 수입축산물 검사결과 부적합내역	수과원장	홈페이지, 월
	· 축산물위생감시실적	수과원장	홈페이지, 분기
	· 축산물수거검사실적	수과원장	홈페이지, 분기
	· 시도별원유검사실적	수과원장	홈페이지, 분기
수산물	· 수입수산물검사결과	수검원장	홈페이지, 분기